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공개여부 결정통지 : 정보공개 법정 처리기간은 10일
  - ※ 청구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는 7일 내 처리 권장
  -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통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 처리기간 기산 : 초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고, 토요일·공휴일은 미 산입
- 처리기간 기산점(업무처리 시간 내를 기준으로 함)
  - 청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한 경우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을 통하여 청구한 경우는 청구서가 시스템에 입력된 날
  -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경우 이송된 날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사유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처리기간 연장 결정 시 연장사실 및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연장 통지서는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연장 근거법령, 연장기간 및 구체적인 연장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의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시스템 결정통지로 갈음 가능하되, 오프라인(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는 결정통지서를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송부,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행정절차법 제14조)

## 정보공개 관련 각종 날짜의 기산 방법

[개정법] 제29조(기간의 계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2.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한 기간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 원칙 : 민법에 따른 기산(초일 불산입, 공휴일 산입)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만료일은 그 익일로 함

구 분	방 법
제3자 이의신청 제기기간	● 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21조제2항)
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 시 공개일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법 제21조제3항)
정보량이 방대한 경우 정보 제공	●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정보 제공(법 제13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제2항)

- 예외 : 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 제11조)
이의신청 처리기한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7일 /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 제18조)
청구인 이의신청 제기기간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법 제18조제1항)